

국제위원회 조사·연구 보고서

- 우리나라 전자(화상)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CAAs 회원국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

※ 편집자 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증업무 또한 전자·화상 공증을 선두로 하는 비대면업무가 각국의 제도권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공증 실무의 기준과 절차 전반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자(화상)공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협회 국제위원회에서는 UINL(국제공증인연합회) 산하 CAAs(아시아지역위원회)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자(화상)공증제도의 도입 배경, 입법 구조, 운영 방식, 실무 절차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진행하고자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① 전자공증의 대상을 사서증서 이외 공정증서 및 집행문까지 확대하고 있는지, ② 전자공증 서류의 보관, 열람, 발급 등 후속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③ 본인 인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대하고 있는지, ④ 사서증서 등 기존 종이 공증 서류의 전자적 보관과 열람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 CAAs 회원국별 제도적 특징과 실무 적용 방법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 전자(화상)공증제도의 개선과 향후 정책 방향 검토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2025년도 국제위원회의 조사·연구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드립니다. 국가별 게재 순서는 ① 대한민국, ② 중국, ③ 몽골, ④ 베트남, ⑤ 우즈베키스탄, ⑥ 카자흐스탄 순입니다.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의 전자(화상)공증제도의 소개와 발전 방향

오 재 창 위원장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공증담당변호사

1. 한국에서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 발전 과정

2010년 8월부터 전자문서 등에 대한 공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 등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계약서, 법인 의사록, 회사 정관 등 사서증서가 대상이지만 공정증서는 대상이 아니다. 실무상 촉탁인이 전자문서 등에 대한 공증을 받으려면, 법무부가 개발·보급한 전자공증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한편 전자공증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인터넷 화상 장치(예를 들면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이나 스마트폰)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전자(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여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에는 본인 인증수단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물론 여권을 추가하면서 재외국민이 전자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전자(화상)공증의 경우 본인 확인을 정확히 함으로써 공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전자공증 시스템에 도입하였고

나아가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화상)공증의 모든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저장하게 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자공증 제도를 시행한 결과 화상공증의 대상 범위가 법인의사록, 회사 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고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전자공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소위 차세대 전자공증 제도의 구축(이를 “전자공증제도 고도화 사업”이라고 호칭함)을 추진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에 의해 공증인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2. 전자(화상)공증의 처리 현황과 평가

(1) 처리 현황

연 도	전자공증	화상공증	합계	비고
2010년	4		4	전자공증제도 도입
2011년	38		38	
2012년	39		39	
2013년	57		57	
2014년	135		135	
2015년	151		151	
2016년	364		364	
2017년	321		321	
2018. 1.~5.	123		123	
2018. 6.~12.	108	141	249	화상공증제도 도입
2019년	63	191	254	
2020년	53	1,781	1,834	코로나-19 팬데믹
2021년	36	2,605	2,641	
2022년	30	2,733	2,763	

2023년	27	3,101	3,128	
2024년	27	2,849	2,876	
2025. 1. 1.~5. 12.	10	1,024	1,034	
합계	1,586	14,425	16,011	

※ 자료 출처 : 법무부 법무과(2025. 5. 현재)

(2) 평가(개선방안)

전자공증 및 화상공증의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민의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가 국민을 상대로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3. 법무부의 차세대 전자공증 제도 추진 방향과 성과

법무부는 현행 전자공증 제도하에서 ① 인증대상 문서가 사서증서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② 인증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없다는 점, ③ 본인 인증 수단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④ 전자공증을 사용하려는 자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자공증 제도 고도화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는데, 구체적 계획 실행 내용에는 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사서증서는 물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 ② 전자공증문서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QR 및 바코드, 문서번호 등 인쇄물을 검증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 ③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범위를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확대하는 것, ④ 종이 공증문서를 전자화하고 보관함으로 써 보관 중인 공증문서에 대한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기능을 구현하는 것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2023년 12월에 위 계획 실행 내용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에 반영하였고 2024년 4월부터 전국의 8개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

증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자공증에 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 전자공증 제도 개정을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소개 및 결론

법무부가 위와 같이 전자공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공증 시스템의 보완을 마쳤지만 개선된 전자공증 제도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입법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회의원 10인이 2025년 2월 공증인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 ① 전자공증의 대상을 사서증서 이외에도 공정증서 및 집행문까지 확대하는 것,
- ② 전자공증 서류의 보관, 열람, 출력, 발급 등 후속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③ 본인 인증 방법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대하는 것,
- ④ 사서증서 등 기존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관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법무부의 전자공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의된 공증인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자공증 제도의 대상범위 확대는 물론 촉탁인, 공증인 모두에게 접근성, 편리성 등이 개선되는 등 국민에 대한 공증 서비스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2 중국 전자공증 제도 개요

안 찬 식 위원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총정 공증담당변호사

1. 서론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전자 공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이다.¹⁾ 반면 중국의 경우 전국 단위로 전자 공증의 활용 건수만을 따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민간 온라인 공증플랫폼의 신청 건수가 2018년 11월 말에서 1,490건 수준에 이르는 등²⁾ 전자 공증 제도의 활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원고는 빠른 속도로 전자 공증 제도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전자 공증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자 공증의 대상이 공정증서 및 결정문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는지, 전자 공증 이후의 사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본인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법무부에 의하면 2021년 전자공증 이용건수는 2,641건으로, 전체 공증 이용건수인 253만 1,088건의 약 0.1%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한경, 「[단독] 공증인 만날 필요 없는 100% 비대면 공증 시스템 나온다」 참조.

2) 관련 기사 참조, 「公证云 让司法更有效率」, https://www.cac.gov.cn/2018-05/09/c_1122804188.htm

2. 중국의 전자공증제도 일반

중국은 2006. 3. 1.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이하 ‘공증법’)을 시행하여 공증 제도에 관한 단일법률을 마련하였고, 동법은 중국 공증 제도의 근거 법령으로 작용하고 있다.³⁾ 그리고 중국의 전자 공증 제도는 전통적인 공증 법제를 전면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중국 공증법과 「전자서명법」 및 하위 규범·행정지침, 그리고 시범 사업 통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되었다.

먼저, 「공증법」은 공증서를 “서면”으로 규정하고 공증인의 서명과 공증기관의 직인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제32조), 전자문서·전자서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더해 「전자서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종이 서명·날인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제3조, 제13조 내지 제16조), 공증기관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전자 직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전자공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해석상의 여지를 제공한다.

한편, 국외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영상 공증 제도는 2020년 이후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2022년 통지를 통해 90여 개 공증기관을 대상으로 제도화된 데 이어, 2023년 추가 통지를 통해 수백 개 공증기관과 재외공관으로 확대되는 등 점진적으로 제도적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재외 중국 국적자의 각종 선언, 재산 관련 위임, 혼인·국적·무범죄·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명, 문서의 서명·인감 인증 및 문서 합치 공증 등을 원격 영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통적 대면 공증의 일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⁴⁾

3) 임호, 중국공증제도의 몇가지 법적 과제, 아시아법제연구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제9면~제10면.

4) China Biz Insight, 「The Rise of E-Notarization: How China's Remote Video Notarization Impacts Apostille in 2025」, <https://cnbizinsight.com/the-rise-of-e-notarization-how-chinas-remote-video-notarization-impacts-apostille-in-2025/>

3. 전자 공증의 대상

중국에서 전자 공증의 “대상”을 논의할 때는 (i) 전자 형식의 사서증서(계약, 위임장, 각종 진술서·합의서 등 민간 문서)에 대한 공증, (ii) 공증기관이 작성·출급하는 공정증서 자체의 전자화, 나아가 (iii) 강제 집행력 부여 공정증서 및 집행문의 전자화 가능성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공증법」은 원칙적으로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사실·문서를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 형식이 반드시 종이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 공증의 허용 여부는 주로 「전자서명법」 및 관련 하위 규범과의 조화를 통해 해석·운영되고 있다.

(1)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 공증

사서증서에 해당하는 계약서, 위임장, 각종 선언·진술서 등 민간 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서명법」 제3조의 일반 규율에 따라 당사자가 전자서명·데이터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데 합의하는 경우 전자 형식이 허용되며, 공증기관도 이를 대상으로 전자 공증을 수행할 수 있다(제3조 제1문). 예컨대 전자계약·전자 채권 문서에 대한 공증, 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전자데이터 보존 공증, 온라인 위임계약에 대한 공증 등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또한 전국 공증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한 “공증云(电子数据保管平台)” 등 플랫폼은, 웹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고정·암호화 저장한 후, 신청에 따라 전자공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전자문서를 기초로 한 사서증서 공증이 완전히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사서증서의 내용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 공증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종이 문서와 병행하는 혼합방식으로 운용된다. 동법 제3조는 (i) 결혼·입양·상속 등 인신 관계에 관한 문서, (ii) 수도·난방·가스 공급 중단 등 공공서비스의 중지·정지에 관한 문서, (iii) 기타 법률·행정 법규에서 전자문서를

5) Qiandun 365, 「电子公证书的法律效力如何? 这些有必要知道, 电子合同签订有用」, <https://www.qiandun365.com/newsDetail/3394>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계약·입양계약·유언 등 인신 및 가족법 영역의 사서증서, 일부 공공서비스의 중지 등에 관한 문서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만으로 완전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 자체에 대한 공증은 여전히 종이 문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이해된다.

(2) 공정증서 및 집행문에 대한 전자 공증

공정증서 자체에 대한 전자화, 즉 “전자 공정 증서” 발급 여부는, 공증 제도의 핵심인 증명력·집행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증법」은 공증서의 형식을 ‘서면’으로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문언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과 공증기관의 전자직인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공정증서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국 법무부를 비롯한 당국의 실무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에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에 대한 전자 공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중국 법무부는 「전자데이터 공증보관 기술 규범」을 통해 전자데이터 보관·출증 절차와 시스템 무결성 보장 등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시하였고(제12조), 각 지방 법무부·공증 협회 및 공증 기관은 “전자공증서”라는 명칭으로, 온라인으로 생성·보관·열람·검증 가능한 공정증서를 발급하는 시범·실무를 전개해 왔다.

가령 장쑤성 원격 영상 공증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원격 공증플랫폼은, 원격 영상 공증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하여, 종이 공정증서와 더불어 전자 직인이 부착된 전자공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용 기관이 온라인으로 내용 확인 및 진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⁶⁾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및 집행문의 전자화 여부에 관해서는, 「공증법」 제37조 및

6) Our Jiangsu, 「江苏推出远程视频公证服务平台 提供“不见面”办证」 <https://www.ourjiangsu.com/a/20200225/1582636817423.shtml>

2017년 법무부·최고인민법원·은행감독위원회의 공동 통지를 기초로 하여 실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통지는 은행권 금융채권의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계약·신용카드 계약·각종 보증계약 등 다양한 채권 문서에 공증기관이 강제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고⁷⁾, 이에 기반하여 민간 공증 플랫폼(公证云) 등은 “온라인으로 채권 문서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체결된 전자 채권 문서에 대하여, 공증기관이 인터넷 공증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고, 공정증서에 강제 집행 문언을 부가하며, 이후 채무불이행 시 공증기관이 전자적으로 집행 증서를 작성·출급하여 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다만 이상과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공증법」은 여전히 전통적인 서면 공정증서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전자 공정증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다수의 기관이 이를 고려하여 여전히 종이로 된 공정증서와 전자 공정증서를 병행하여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법무부 역시 “온라인 공증에 대한 업계 지도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⁸⁾,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중국 전자 공증 제도는 공정증서에 관하여는 종이와 전자의 병행 내지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전자 공증 후속사무의 처리

(1) 전자 공증 서류의 보관

한편, 현재 중국에서는 전자 공증에 의하여 생성된 서류 및 그 기초가 되는 전자데이터를 중국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시스템, 민간 플랫폼, 공증기관 자체 시스템 및 블록체인

7) 중국 법무부 제공, https://www.moj.gov.cn/pub/sfbgw/zwxxgk/fdzdgknr/fdzdgknrtzwwj/202103/t20210316_207587.html

8) 중국 법무부 제공, https://www.spp.gov.cn/spp/llyj/202408/t20240807_662617.shtml

네트워크상에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구조가 이미 상당 부분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운영하는 ‘중국공증온라인 시스템(이하 ‘중국공증온라인’)'은 ‘공증 진행 상황 조회’, ‘공증서 진위 검증’, ‘공증서 전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 플랫폼인 공증云 역시 ‘전자데이터 보존 기록 조회’, ‘문서 조회’, ‘공증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공증기관은 전자공증서 및 공증기관에서 보관 중인 전자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 및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전자공증서에 관하여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⁹⁾

(2) 전자 공증 서류의 열람

또한, 중국에서는 전자 공증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공증온라인에서는 ‘공증서 전문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증서 진위 검증’ 메뉴도 별도로 두고 있어 제3자가 공증서 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해당 공증서가 실제 발급된 공증서인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인 공증云 역시 문서유형, 공증기관명, 공증인, 문서번호, 신청인의 신분증 번호 등을 입력하면 전자적으로 공증 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전자 공증 서류의 발급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전자 공증 제도가 도입 및 확대되면서, 공증의 결과물인 공증 서류의 발급도 점차 전자적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자데이터 공증보관 기술 규범(电子数据公证保管技术规范, SF/T 0091-2021)」은 전자적 발급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공증기관이 전자데이터를 보관한 뒤 그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제6조 내지 제12조 참조). 또한 민간

9) 장안공증처(法信公证云核查平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인 공중云 역시 자사 앱과 웹을 통해 전자 공증이 이루어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암호화하여 공증기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공증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 및 수령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¹⁰⁾

6.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현황

전자 공증이 실질적인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대면 확인 기능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전자적 본인인증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사이버안전법」을 통하여 네트워크 실명제, 국가 네트워크 신원인증, eID, 전자신분증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전자적 본인인증을 시행하여 왔는데, 공증과 관련하여도 해당 제도들이 본인인증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안전법」 제24조는 네트워크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인터넷 접속, 도메인 등록, 전화 서비스, 정보 게시 및 메신저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이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및 플랫폼 사업자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신분증 번호, 실명,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뒤 통신사 및公安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실명 인증을 수행한다.

또한, 公安部에서는 ‘국가 네트워크 신원인증’과 ‘eID’를 도입하여 실명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면서도 일반 서비스에는 암호화된 전자 자격 증명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eID는 NFC로 신분증을 인식한 뒤 얼굴 인식, 결제 비밀번호 등을 결합하여 단말기에 탑재되고, 이후에는 은행 거래, 항공 및 여행 앱, 공공서비스 등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公安部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

10) 공중云 모바일 앱 설명 참조.

리 방법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중국의 유효한 법정 신분증을 가진 자연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통합 인터넷 신분증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왕하오’와 ‘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개인 신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왕하오’와 ‘왕정’만 있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¹¹⁾

7. 전자 공증 제도 하에서의 실물 공증 서류의 취급

중국 법무부와 국가문서관리국은 2025. 6. 20.부터 시행되는 「공증기록물관리방법」을 제정하면서, 제29조를 통하여 ‘전통¹²⁾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장려·지원’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28조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증 전자 문서자료는 전통적 매체를 통한 공증 기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기존 종이 공증 기록은 디지털화를 장려 및 지원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저장된 공증 서류 등의 기록물에 관하여 실물 공증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결론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중국의 전자 공증 제도는 전자 공증의 대상을 공정증서 및 집행문까지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 공증 이후의 사무 처리인 공증 서류의 보관, 열람, 발급, 진위 검증 및 관련 데이터의 기관 간 연계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 공증의 전제가 되는 전자적 본인인증 제도 역시 「사이버안전법」상의 실명제 등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11) 중국전문가포럼, 「中 ‘국가 통합 인터넷 신분증’ 도입 예정...학자들 검열 확대 가능성 우려」,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4721&mid=a20200000000&board_id=2

12) 종이 등 기존 매체 기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 또한 전자 공증 제도 이용이 중국 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기존에 실물로 공증이 이루어진 서류에 관하여도 전자적 방식으로의 처리를 장려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중국에서 전자 공증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 공증 제도의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현행 전자 공증 제도하에서 인증 대상 문서가 사서증서로 한정된 점, 인증한 전자문서의 출력이 불가능한 점, 본인인증 수단이 한정된 점, 전자 공증을 사용하려는 자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주변국의 전자 공증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전자 공증 제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몽골

3 몽골 사례를 참고한 한국 공증법제 개선 정책제언 보고서

최 윤 상 위원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정진 공증담당변호사

1. 보고서 개요

(1) 제목

몽골 공증제도 디지털 전환 사례를 토대로 한 한국 공증 관련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2) 작성 목적

본 보고서는 몽골의 전자공증·원격공증 도입 과정과 공증인 지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공증법제(공증인법 및 관련 전자·원격 인증제도)의 중장기 개정 방향과 공증인 지역 확대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검토 범위

- 몽골 공증법, 몽골공증인회(MCN)의 2023~2025년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한 제도 분석

- 몽골의 E-Notary·원격공증 도입 과정, 국가정보교환플랫폼(KHUR) 연계,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이하 AML이라 함) 역할 강화 등
- 이를 한국의 ① 공증인 제도(공증인법 등), ② 공인전자서명·전자문서·전자등기 등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입법·정책 과제 도출

2. 배경 및 문제의식

(1) 디지털 전환과 공증제도의 재정의(再定義) 필요

전통적으로 공증제도는 ① 서면·대면 중심, ② 공증사무소 방문, ③ 종이 문서 보관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① 비대면 거래, ② 전자계약·전자서명, ③ 블록체인·분산원장, ④ 국제·온라인 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공증제도의 “형태”와 “도구”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재편되어야 할 시점이다.

몽골은 라틴형 공증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E-Notary 시스템과 KHUR(국가정보교환 플랫폼)을 결합하여 전자공증·원격공증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몽골의 법령 불일치(민법 vs 공증법), 공증인의 역할 재정립, AML 플랫폼화는 한국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한국 공증제도의 구조적 한계

한국도 전자서명·전자문서, 인터넷등기소 등 부분적인 전자화는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공증” 그 자체를 전자·원격 환경에서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① 종합 법제, ② 공증인 직역의 역할 재정립, ③ AML·규제 플랫폼과의 결합 측면에서 일관된 중장기 로드맵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① 대면주의·서면주의에 기반한 공증 법령과 실무 관행, ② 공증인 업무와 온라인 인증·전자계약 서비스(사적 플랫폼) 간 기능 중첩, ③ 국제 거래에서의 전자·원격공

증의 상호인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증법·공증인법의 틀을 한 번 크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몽골의 구체적 경험을 “그대로 수입하자”는 뜻이 아니라, **한국 공증제도의 디지털·국제화 전략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거울”로 삼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3. 몽골 공증제도의 디지털 전환 특징

(1) 라틴형 공증 구조 유지

- 공증인은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계약·법률행위에 공적 신뢰 부여
- 공증법에서 자격, 임명, 감독, 책임, 수수료 체계를 상세 규율

(2) 몽골공증인회(MCN)에 의한 자율규제·정책 추진

- 교육·윤리감독·제도 개선·국제협력·디지털 프로젝트(E-Notary 등)를 공증인회가 주도
- 정부와의 “정책 파트너” 역할 수행

(3) 전자공증·원격공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시도

- 민법에 전자·원격 형태의 계약·공증 가능성 명시
- 공증법상 여전히 대면주의 규정이 존재하여 “**민법(디지털) vs 공증법(대면)**” 간 불일치가 정책 이슈로 부각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증법 개정 논의 본격화

(4) E-Notary 시스템 + 국가 데이터 플랫폼(KHUR) 연동

- 공증인이 E-Notary로 사건 접수·처리, 전자기록 관리
- KHUR(국가 정보교환 플랫폼)와 연계하여 신원·등기·법인 정보 등 국가 데이터 실시간 확인
- 원격 testimony(영상 진술)·영상 녹화 기능 도입을 추진

(5) 공증인을 AML/CFT(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 플랫폼의 핵심 행위자로 위치

- 자금세탁 의심거래,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공증인에게 부여
- 디지털 시스템(E-Notary)과 결합해 규제 집행 효율성 제고

4. 한국 공증법제 개정과 관련된 시사점

몽골 사례에서 한국에 직접 시사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률 간 정합성”을 전제로 한 전자·원격공증 도입

한국 역시 민법·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공증인법·등기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실제 실무에서 가능한 것”과 “공증법제가 상정한 틀” 사이의 간극이 발생 중 몽골의 “민법 vs 공증법 충돌” 문제는 한국도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2) 공증인 직역의 디지털 역할 재정의 필요

몽골이 공증인을 자금세탁방지·규제 플랫폼의 핵심 행위자로 명시한 것처럼, 한국도 공증인의 역할을 “단순 인증인이 아닌, 디지털 거래의 합법성·투명성·AML의 관문”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3) 국가 데이터 플랫폼과 공증 시스템의 통합

몽골의 KHUR 연계는 **신원확인·권리관계 확인을 국가 인프라와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한국도 주민등록, 등기, 법인·사업자 정보, 세무 정보 등국가가 관리하는 정보들과 공증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통합**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4) 국제 상호인정과 디지털 공증의 글로벌 스탠더드

몽골은 UINL·CAAs 등 국제공증기구 활동을 통한 제도 현대화를 중시한다. 한국 역시 전자·원격공증의 국제 상호인정 체계,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 등을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5. 한국 공증법률 개정 방향 제안

(1) 기본 방향

가. “대면·서면 중심 공증법제”에서 “디지털·원격 친화 공증법제”로의 전환

나. 공증인을 전자 거래·국제 거래의 “합법성 게이트키퍼”이자 AML 규제협력자로 재정의(再定義)

다. 국가 데이터 인프라(주민·법인·부동산·세무 등)와 공증 시스템의 **전략적 연계**

라. 국제 라틴형 공증 표준과 전자·원격공증 상호인정을 염두에 둔 법제 설계

(2) 입법 전략 : 단계별 개편 접근

- 1단계 : 현행 공증인법·관련 법령의 디지털 관점 전면 재검토
 - 용어·개념(문서, 서명, 출석, 원본 등)을 전자 환경에 맞게 재정의
- 2단계 : “전자공증 및 원격공증에 관한 기본 규정” 삽입 또는 **별도 법률 제정**

◦ 예: 「전자공증 및 원격공증에 관한 법률(가칭)」

- 3단계 : 국가 데이터 인프라 및 AML 법제와의 연동 규정 마련
 - 공증인이 국가 AML 체계의 중요한 보고 의무자로 기능하도록 정합적 규율
 - 외국 전자·원격공증 문서의 활용, 한국 공증문서의 해외 활용을 염두에 둔 조항 신설

6. 세부 정책제언

(1) 법률·제도 측면

가. “출석” 개념의 재정립 및 원격공증 근거 규정 신설

- 현행 공증 실무가 예정하는 “출석”을 물리적 출석 + 전자적 출석(영상·전자신분증 확인 등)으로 이분화
- 공증인법 또는 특별법에 “당사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출석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 신설
- 몽골과 같이 민법·공증법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공증인법·전자문서법의 정의 규정 정합성 확보**

나. 전자·원격공증의 허용 범위 및 제한 규정

- 부동산·상속·가족법 등 고위험 영역과 상거래·회사·위임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영역을 구분
- 1단계로는 **법인 관련 문서(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 등)** 및 상사·민사 계약의 일부에 대해 **원격공증을 시범 허용**하고, 부동산·상속은 추후 확대 검토

다. 영상기록·전자기록의 증거력 및 보관 의무 규정

- 원격공증 시 영상기록을 의무적으로 생성·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기록의 증거력(공증문서와 결합된 보조증거로서의 지위)을 명확히 규정
- 기록 보관 기간, 열람권, 삭제 시점, 행사절차·조사절차에서의 제출 요건 명문화

(2) 기술·인프라 측면

가. 한국형 E-Notary 플랫폼 구축·고도화

- 현재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인터넷등기소, 전자공인인증, 전자문서 보관 등)을 통합하여 “한국형 E-Notary 플랫폼”으로 재구축
- 기능
 - 공증 사건 접수·처리·보관
 - 국가 관리 데이터(주민·법인·등기·세무 등)와 연동
 - AML 관련 위험도 분석 모듈 탑재
 - 영상회의 및 녹화 기능

나.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의 연계

- 몽골의 KHUR처럼, ① 주민등록, ② 부동산 등기, ③ 법인·사업자 등록, ④ 세무 기본정보를 공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원·권리관계 확인을 “원클릭”으로 처리** 가능하게 설계
- 이를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등) 간 MOU 및 법령 정비 필요

(3) 공증인 직역 및 AML 역할 측면

가. 공증인의 AML/CFT 보고의무 법제화·구체화

- 몽골처럼 공증인을 **AML 체계상의 핵심 보고 의무자**로 명시
- 공증대상 거래 중 ① 고액·고위험 거래, ② 국경 간 거래, ③ 특정 국적·고위험 산업 등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 규정
- 대한공증인협회·금융정보분석원(FIU) 간 ① 정기 교육, ② 사례 공유, ③ 전산 시스템 연계 체계 마련

나. 공증인 교육·연수 체계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보안, 영상 인터뷰 기법, 원격공증 윤리, 국제 거래 실무 등을 **의무 연수 과목**으로 편입

- 몽골공증인회(MCN)처럼 공증인협회가 디지털 교육·윤리 규범 제정을 주도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4) 이용자 보호·신뢰 제고 측면

가.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및 합리화

- 대면공증 vs 원격공증 간 수수료 구조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비용 대비 얻는 효익(效益)(시간·접근성·국제 활용성)”을 알기 쉽게 안내

나. 민원·분쟁 처리 절차 정비

- 원격공증을 둘러싼 ① 신원 도용, ② 강요·협박 하의 공증, ③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해, 공증인·국가·시스템 운영자의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이의신청 절차를 별도 규정

(5) 국제 조화 및 상호인정 측면

가. 전자·원격공증의 국제 상호인정 체계 구축

- 주요 교역국(예: 몽골, 중국, 동남아, 미국·EU 일부 국가 등)과의 **전자공증·원격공증 문서 상호인정**에 관한 양자·다자 협의 채널 개설
- 국제 라틴형 공증기구(UINL 등)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형 전자·원격공증 모델을 국제 표준과 조화되게 설계

나.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 도입 확대

- 전자공증·원격공증 문서에 대해 **전자 아포스티유**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해외 투자·국제거래에서 한국 공증문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의 요지

(1) 공증제도는 “디지털 시대의 국가 법적 인프라”

단순 인증 절차가 아니라, 전자·국제 거래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再定義)해야 함.

(2) 몽골 사례의 핵심 메시지

민법과 공증법의 불일치, 공증인의 디지털 역할 정의 부족,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의 미흡한 연계가 원격공증 도입의 최대 장애요인이었음.

→ 한국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통합적 입법 설계** 필요

(3) 한국 공증법률 개정의 방향

- “대면·서면” 중심 규정을 “디지털·원격 포함” 구조로 조정
- 공증인을 AML·디지털 규제 플랫폼의 핵심 행위자로 위치
-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의 E-Notary 통합
- 국제 상호인정·전자 아포스티유 등을 염두에 둔 글로벌 스탠더드 지향

(4) 실행을 위한 제도적 제언

- 공증인법·전자문서 관련 법령의 동시 개정 패키지 추진
- “전자·원격공증 기본법(가칭)” 또는 공증인법 내 전자공증·원격공증 장(章) 신설
- 관계부처·공증인협회·전산전문가·AML 전문가를 포함한 **법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



베트남

4 베트남의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검토 (대한민국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이 지 훈 간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센트럴 공증담당변호사

1. 서론

전자적 방식에 의한 법률행위의 처리와 인증은 현대 법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증제도는 법률행위의 진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하여 왔으며, 전자공증(Electronic Notarization)은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공증제도의 전통적 구조를 재구성하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행정 전략과 연계하여 전자공증제도의 도입과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공증의 공신력과 사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점에 따라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전자공증제도의 법적 구조와 운용 실태 및 효력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대한민국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전자공증의 제도적 성격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베트남 전자공증제도의 법제적 기반

(1) 공증법 체계

베트남의 전자공증제도는 독립된 전자공증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 아니하고, 기존 공

증법과 전자거래 관련 법령의 결합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법 (Luật Công chứng, 2014)」
-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 Decree No. 45/2020/ND-CP
- Decree No. 130/2018/ND-CP

공증법 제2조는 공증을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 및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는 공증문서가 법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적 형식의 공증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부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거래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 전자문서의 법적 유효성 인정
- 제14조: 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 제23조: 전자문서의 진정성 판단 기준

이에 따라 일정한 기술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 전자공증의 운영 구조

(1) 혼합형 전자공증의 일반화

현재 베트남의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비대면 공증이 아닌, 대면 절차와 전자 절차가 병행되는 혼합형 전자공증이 일반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공증 신청이 접수됩니다.
 둘째, 계약서 및 관련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사전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당사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원 확인을 받습니다.
 넷째, 전자서명과 수기서명이 병행됩니다.
 다섯째, 전자 기록 보관과 종이문서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완전한 비대면 공증제도라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조적 공증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전면 전자공증의 시범적 운영

일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화상 인증과 전자서명을 활용한 전면 전자공증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적 안정성과 전국적 통일성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공증 대상별 전자공증 적용 가능성

(1) 적용 가능한 범주

문서 유형	적용 가능성	법적 근거
일반 위임장	인정됨	공증법 제2조
사실확인서	인정됨	공증법 제5조
기업 결의문	조건부 인정	전자거래법 제8조

(2) 적용이 제한되는 영역

문서 유형	제한 사유
부동산 매매 계약	공공질서 및登記 안정성 훼손 우려
상속 관련 계약	분쟁 가능성 증가
담보 설정 계약	집행 단계에서의 법적 불확실성

5. 외국인 및 외국기업 관련 전자공증의 적용

외국인이 당사자로 포함되는 경우, 베트남 공증 실무에서는 보다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공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외국 발행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해당 번역문에 대해 공증 또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신원 확인을 위한 대면 절차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재산권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의 경우 전자공증이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은 베트남 법체계가 외국인 관련 거래에 대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전자공증의 법적 효력 분석

(1) 증거력

공증법 제5조에 의하면 공증문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에 대해 강한 법적 추정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증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일부 법원은 전자적 형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집행력

특정 채무 이행 계약의 경우 공증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전자공증 형식의 문서에 대해 동일한 효력이 안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7. 대한민국 제도와의 비교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제도는 베트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 철학 또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제적 구조, 운영 방식, 기술적 기반, 공증 효력의 관점에서 양국의 제도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1) 법제 구조의 비교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공증인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통해 보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공증법」과 「전자거래법」의 이원적 구조뿐 아니라 여러 시행령을 통해 전자공증제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항목	베트남	대한민국
근거 법령	공증법 + 전자거래법 + 시행령 체계	공증인법 + 전자문서법
구조적 특징	다층적·행정 실무 기반	단층적·사법적 통제 중심

이와 같은 차이는 베트남이 행정적 효율성과 제도적 확장을 우선하는 구조인 반면, 대한민국은 공증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2) 운영 방식 비교

베트남은 혼합형 전자공증을 중심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전면 전자공증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대면 공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공증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항목	베트남	대한민국
운영 형태	혼합형 전자공증 + 시범적 비대면 공증	대면 중심, 전자공증 일부 허용
전자적 절차	신청·제출·검토 대부분 전자화	일부 서류 제출만 전자화
신원 확인	대면 + 전자 인증 병행	대면 원칙 엄격 유지

이와 같은 구조는 베트남이 디지털화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기술 도입을 시도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공증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우선시함을 보여줍니다.

(3) 기술 도입 비교

베트남은 e-KYC(전자적 본인 확인), 국가 전자서명 시스템, QR 인증 체계 등 비교

적 다양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주로 공동인증서 중심의 안정된 방식을 사용하며, 기술적 혁신보다는 법적 신뢰성 강화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 요소	베트남	대한민국
전자서명	국가 인증서 기반 PKI	공동인증서 중심
본인 확인	e-KYC, 얼굴 인식 기술 활용	현장 확인 중심
문서 검증	QR 코드·전자 DB 연계	전자문서 검증 시스템 제한적

베트남이 기술 수용에 개방적인 반면, 대한민국은 기술 도입의 신중함을 통해 공증의 사법적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공증 효력의 비교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공증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항목	베트남	대한민국
법적 추정력	강한 법적 추정 인정	강한 추정 인정(유사)
강제집행력	일정 문서에 대해 공증만으로 집행 가능	공증문서 자체로는 제한적
전자공증 효력	종이 공증과 동일 취급 경향	제한적으로만 인정

베트남에서는 공증문서의 준사법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전자공증에 대해서도 점차 동일한 수준의 효력이 부여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공증문서의 집행력 부여에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관련 규율 비교

베트남은 외국인이 관련된 공증에 대하여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공증 적용도 제한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외국 관련 공증에서는 보수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전자공증 자체의 활용 범위가 좁기 때문에 외국인 공증에 관한 전자적 처리 가능성은 더욱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종합 비교 평가

위의 비교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은 행정 디지털화 전략과 연계하여 전자공증제도를 신속하게 확장하는 국가이며,
- 대한민국은 공증의 사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공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국가는 전자공증제도를 서로 다른 지향점과 법제적 철학에 따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제도 설계뿐 아니라 실무 운영 및 법적 효력 인정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8. 결론

베트남은 개정 공증법의 2025. 7. 1. 시행으로 최초로 전자공증을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자공증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는 작성된 것이 없으나, 아직 전자공증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전자공증제도는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안전성과 공증 실무의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공증의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자공증제도는 법률행위의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공증제도의 기능을 단순한 인증 절차를 넘어 법률거래 인프라로 확장시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전자공증제도의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 통합성 확보, 전국적 표준화 및 사법적 수용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5 우즈베키스탄 전자공증제도와 우리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시사점

강 신 하 부위원장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공증담당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우리 공증인법은 2017. 12. 12. 공증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가 공포되어 2018. 6. 20.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공증의 대상은 법인의사록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유언 공정증서나 집행문 등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재 공정증서 및 집행문에 대한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전자공증제도는 전자공증을 처리하는 지정공증인의 숫자가 많지 않고,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전자공증 현황과 비교하여 전자공증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¹⁾.

전자공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전자공증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 전자공

1) 김상영, “전자공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63권 제3호 통권 114호, 2022. 11, 30쪽.

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우즈베키스탄의 전자공증제도

우즈베키스탄은 2020. 1.경 공증인법이 개정되어 전자공증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e-notarius.uz)을 개발하여 모든 형태의 등록증, 진술서 등에 대해 전자공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공증을 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문이나 개인정보 등에 의한 화상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²⁾.

우즈베키스탄은 공증요금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있다. 영수증이 전자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공증요금 등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전자공증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공증보관소에 보관하여 공증업무를 국가가 관리·감독하여 공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증제도와 관련한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³⁾.

3. 우리 전자(화상)공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1) 본인확인절차의 간이화

우리나라는 전자공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실시간 대면 확인 등 복잡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확인절차로 인하여 전자공증을 꺼리

2) 대한공증인협회, “국제회의 참관기(2023 CAAs 회원국 발표문 우즈베키스탄)”, 공증과신뢰(통권 제16호), 108쪽.

3) 대한공증인협회, 위 논문, 108쪽~110쪽.

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문이나 전자신분증 등을 통해 간이하게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전자공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전자공증 체계와 통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결제제도의 투명화

우즈베키스탄의 전자공증제도는 공증수수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이 자동 생성하도록 하여 공증제도의 이용과 관련한 수수료 및 세금 제도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결제 제도의 디지털화는 우리나라도 도입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전자공증 제도의 확대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서증서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실제 활용도가 많은 유언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확정일자 전자공증제도 역시 활용도가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않고 있다⁴⁾.

공정증서, 집행문 및 확정일자에 대해서도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간이·신속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증인법은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서류에 대한 열람 등 후속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4) 김상영, 앞의 논문, 130쪽.

(4) 전자공증제도의 홍보

전자공증제도는 국민편익 증진,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공증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법원 등의 홍보 게시물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에 대한 홍보영상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자소송과 같은 실제 이용에 앞서서 ‘전자공증 체험하기’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⁵⁾

4. 결론

우리나라는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활용도가 높은 공정증서 및 집행이나 확정일자 등에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본인확인절차도 너무 복잡하여 이용을 꺼리게 하고 있다.

전자공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문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의 간소화,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에 대해서도 전자공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들에 대한 전자공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5) 전병서, “전자공증 활성화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13, 574쪽~575쪽.



카자흐스탄

6 카자흐스탄 전자공증제도 소개

오 재 창 위원장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공증담당변호사

1. 들어가는 말 – 카자흐스탄 공증제도 일반 및 전자공증제도 도입

카자흐스탄은 1991년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가 되었으므로, 1997년 7월 14일 공증인법 제정과 2000년 공증인회¹⁾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공증제도가 시작되었다. 그 후 2011년 공증인법이 개정되었고 2012년 E-Notary 제도가 도입된 후 코로나 시기인 2022년 디지털 공증인(Digital notariat)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카자흐스탄 전자공증제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2022년 시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카자흐스탄·러시아 언어로 된 관련 문헌 외에 영어로 된 정보가 제한적이며, 심지어 2024년 카자흐스탄공증인회에서 제공한 공식자료²⁾조차 4면 정도로 부실하여 상세한 제도 소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계 속에 아래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시행 중인 전자공증제도의 개

1) 현재 약 4,000명 정도 공증인이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2)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신뢰(2024. 통권 제17호), 카자흐스탄공증인회 발표문(영문, 한글번역본), 142면부터 149면.

략적 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전자공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본인확인절차, 전자공증제도의 대상 문서 내지 범위, 그밖에 시행 중인 지역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카자흐스탄 전자공증제도 일반에 관한 소개는 위에서 언급한 공증 인회의 공식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자료, 언론 소개 영상³⁾ 및 관련 법령⁴⁾ 등 자료에 기초하였지만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매우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전자공증제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 카자흐스탄의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및 이용 필요조건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공증 촉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주로 큰 도시에서 활동 중인 공증인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공증인을 찾아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먼저 필요하다. 즉, 공증 촉탁인이 (1) 스마트폰과 (2)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3. 카자흐스탄에서 전자공증제도 이용 절차(본인 확인 절차 포함)

- (1) 전자공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촉탁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e-Gov Mobile)을 설치하고 자신의 전자 디지털 서명(EDS)을 4자리 PIN 코드와 기기에 내장된 생체인식(Face ID, Touch ID)에 연결하여 로그인해서 법무부가 제공

3)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무부 제공 <https://www.gov.kz/situations/721/intro?lang=en>, 카자흐스탄 티비의 뉴스자료(Kazakhstan launches e-notary service in pilot mode. Qazaq TV) 등 참조.

4) 공증인법 7장 44-1조에서 전자공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는 전자공증제도에 접근·이용할 수 있게 된다.⁵⁾

(2) 법무부는 전자공증제도 이용 시 보안을 위해 공증촉탁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스마트폰 모바일앱에 설치된 자신의 인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공증제도에 접근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접속한 촉탁인에게 법무부에서 촉탁인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문자 등을 보내 촉탁인이 재차 확인 문자를 송부하는 등 2단계 인증 시스템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⁶⁾

(3) 구체적으로 예컨대 ‘디지털 위임장’ 문서를 온라인 전자공증으로 받는 경우를 상정하여 본인확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⁷⁾

- ① 촉탁인이 자신의 모바일 핸드폰의 앱(e-Gov Mobile)에 로그인하여 법무부로부터 본인 확인을 받는다.
- ② 촉탁인이 공증받을 서류 유형 및 공증인을 선택한 후, 촉탁 신청서 작성 및 디지털 서명(EDS)에 의해, 서명을 한다.
- ③ 공증인이 촉탁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컴퓨터 화상으로 촉탁인과 영상통화를 한다.
- ④ 공증인이 촉탁인의 신원확인을 한 후 해당 공증서류 작성 후 촉탁인의 디지털 서명 및 공증인의 서명을 통해 공증문서가 완성된다.
- ⑤ 촉탁인이 정해진 금액의 공증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 전자공증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디지털 문서(Digital Documents)” 섹션에서 수령한다.

5)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신회(2024. 통권 제17호), 카자흐스탄공증인회 발표문(영문, 한글번역본), 142면, 146면.

6)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신회(2024. 통권 제17호), 카자흐스탄공증인회 발표문(영문, 한글번역본), 143면, 147면.

7) 이하 내용은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무부 제공 <https://www.gov.kz/situations/721/intro?lang=en> 2면부터 3면 사이.

4. 전자공증 대상 문서(공증서비스)의 종류(범위) 및 지역적 범위

카자흐스탄에서 공증 촉탁인이 핸드폰 모바일앱과 컴퓨터를 통해 공증인과 전자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증에 관한 서비스 내지 전자공증 방식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문서의 범위(종류)는 매우 제한적이다.

(1) 위와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공증서비스는 공증인과의 자문(Consultation)이다. 촉탁인은 공증인을 대면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공증문서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⁸⁾

(2) 각종 위임장 (Power of Attorney, representation agreement) 문서 작성을 전자공증으로 받을 수 있다. 전자공증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오로지 3가지 종류의 위임장(① 모든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촉탁인을 대리하기 위한 위임장, ② 상속 합의서 관련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위임장, ③ 카자흐스탄 내 법원에서 소송대리와 배우자의 동의, 공증 온라인 자문을 대리하여 받기 위한 위임장) 문서만을 전자공증으로 받을 수 있었다.⁹⁾ 그러나 현재는 재산 처분에 관련한 위임장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위임장을 전자 공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⁰⁾

(3) 각종 동의서(Consents) 문서를 전자 공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¹¹⁾

8)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신뢰(2024. 통권 제17호), 카자흐스탄공증인회 발표문(영문, 한글번역본), 145면, 149면.

9)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신뢰(2024. 통권 제17호), 카자흐스탄공증인회 발표문(영문, 한글번역본), 144면, 148면.

10) 카자흐스탄 티비의 뉴스자료(Kazakhstan launches e-notary service in pilot mode. Qazaq TV).

11)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신뢰(2024. 통권 제17호), 카자흐스탄공증인회 발표문(영문, 한글번역본), 145면, 149면.

(4) 혼인 부존재 확인서(Statements of absence of marriage)를 전자 공증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¹²⁾

(5) 전자공증 제도가 시행 중인 지역적 범위는 코로나 시기에는 파블로다르(Pavlodar) 지역, 서(西)카자흐스탄, 북(北)카자흐스탄 지역의 공증인을 대상으로 전자 공증이 시행되었으나,¹³⁾ 앞으로 전자공증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과 전자 공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류, 문서의 종류(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5. 결론

위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 전자공증제도는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 도입되었고 그 시행 지역도 한정적이며, 심지어 대상 문서도 3~4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등 매우 제한적 형태로 전자공증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전자공증제도는 그 시행으로부터 불과 3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 무려 약 35만 건의 전자공증 문서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¹⁴⁾

이는 한국이 2010년부터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중반까지 12년 이상 기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만 건 정도의 전자공증 문서가 작성된 결과¹⁵⁾와 비교할 때, 카자흐스탄의 전자공증 제도는 훨씬 활성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자공증제도와 비교하여 카자흐스탄의 전자공증제도는 본인확인 절차가 한국처럼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진위확인 시스템이 아니라, 핸드폰 모

12) 상동.

13) 카자흐스탄 티비의 뉴스자료(Kazakhstan launches e-notary service in pilot mode. Qazaq TV).

14) 상동.

15) 법무부 법무과 배포자료(2023. 6.자).

바일앱을 통한 방식이라는 점, 공증수수료도 곧바로 핸드폰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는 점, 전자공증의 대상이 되는 종류(범위)가 3~4개에 불과한 한국과 달리 공정증서, 집행문을 제외한 다양한 사서증서 인증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지리적으로 한국에 비하여 너무나 넓어서 전자공증 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이 한국에 비하여 위와 같이 많은 전자공증 제도 이용을 하게 된 배경·이유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한국에서 전자공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